

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8월 28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현행 조례에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영종·용유 등 지역주민은 인천국제공항공속도로(북인천 영업소) 통행료를 지원받고 초과되는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나, 인천국제공항공속도로에 대한 민자법인의 자금재조달로 통행료가 인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은 인천대교 통행료의 부담이 증가되는 실정임.
- 나. 이에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지역주민에게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5를 지원하여 통행료 증가에 대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함.
- 다.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천대교(인천대교 영업소)를 통행하는 감면대상차량에 대하여
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5를 감면함(안 제6조제3항)
- 나. 통행료 지원기준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제3연륙교 개통
시까지로 연장함(안 조례 제3998-1호 부칙 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
2015년 9월 7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
광역시의회의회장(참조 :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45,
팩스 032-440-8766, 이메일 : adioseve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
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이다음”을 “주민이 다음”으로, “말하며, 제1호의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”를 “말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료 감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(북인천 영업소): 통행료 전액 감면
2. 인천대교(인천대교 영업소): 통행료의 100분의 65 감면

조례 제3998-1호 「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」 부칙 제2항 중 “2016년 12월 31일”을 “제3연륙교(영종~청라간 연결도로를 말한다) 개통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통행료"라 함은 영종·용유지역 등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, 제1호의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주 민이 다음 ----- ----- ----- 말한다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지원 기준) ①·② (생략)	제6조(지원 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하고, 초과되는 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.</u>	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료 감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	1. <u>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(북인천 영업소): 통행료 전액 감면</u>
	2. <u>인천대교(인천대교 영업소): 통행료의 100분의 65 감면</u>
부칙(조례 제3998-1호)	부칙(조례 제3998-1호)
① (시행일) (생략)	① 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
②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② (유효기간) ----- 제3연 륙교(영종~청라간 연결도로를 말한다) 개통 시----- -----.